

# 2019년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자체감사(종합감사) 결과

## 1. 감사결과 총괄

(단위: 건, 명, 원)

합 계			징계	시정	주의·경고	개선	권고	통보	현지조치	모범사례
총 건수	신분상 조치인원	재정상 조치금액								
18	17	282,670	-	2	4	5	3	4	7	-

## 2. 지적 및 처분요구사항

순번	처분요구	지 적 내 용	담당부서
1	개선·주의	고용계약서 및 임금대장 등 작성 부적정	인재경영실
2	시정	외부강의등에 따른 출장비 지급 부적정 및 복무등록 미흡	인재경영실
3	권고	계약대금 지급 시 납세증명서 미 징구	총무전산실
4	권고	사무인계·인수업무 소홀	총무전산실
5	개선·주의(경고)	고정자산 관리 및 처분 부적절	지방이전추진실 인재경영실
6	권고	기관 신용카드 관리 미흡	재정관리실
7	통보	결산 회계처리 부적정	재정관리실
8	개선·통보	회계관계직원의 책임제도 운영 미흡	재정관리실
9	시정	조달청 나라장터 물품대금 납부기한 미 준수	재정관리실
10	개선	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원규정비 미흡	인재경영실 총무전산실
11	개선	예산편성·집행지침 및 실행예산서 작성 개선 필요	기획예산실
12	통보	동호회 지원예산 편성 부적정	기획예산실
13	주의·통보	인지세 적시 납부 미 이행	총무전산실 인재경영실

### 3. 세부 지적내용

처분요구	지 적 내 용	담당부서
개선·주의	<p>□ 고용계약서 및 임금대장 등 작성 부적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근로기준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고용계약서, 임금대장에 근로일수, 업무 등을 명시하여야 하고, 취업규칙이 변경될 경우 이를 노동관서에 즉시 신고하여야 하나,</li> <li>- 일부 항목이 관련 내부 규정 양식상에 누락되었고, 근로기준법 개정사항이 취업규칙에 반영되지 않았으며, 변경사항을 즉시 신고하지 않았으므로,</li> <li>○ 향후 동법에 따라 관련 규정 및 양식을 개정하고, 취업규칙 개정사항을 노동관서에 즉시 신고하시기 바라며, 관련자에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람</li> </ul>	인재경영실
시정	<p>□ 외부강의등에 따른 출장비 지급 부적정 및 복무등록 미흡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외부강의 신고 시 무급출장이 원칙이고, 이에 따른 복무처리는 별도로 이루어져야 하나,</li> <li>○ 복무를 반복적으로 등록하지 않은 직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고, 출장비를 지급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을 회수하시기 바람</li> </ul>	인재경영실
권고	<p>□ 계약대금 지급 시 납세증명서 미 징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국세징수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수의계약 이외의 대금 지급 시에는 납세자로부터 납세증명서를 제출받아야 하나,</li> <li>- 납세증명서 제출 과정을 누락하였으므로,</li> <li>○ 향후 수의계약이 아닌 건에 대해서는 대금 지급 시 납세증명서를 제출받아 회계부서로 지출발의 하시기 바람</li> </ul>	총무전산실
권고	<p>□ 사무인계·인수업무 소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「사무인계인수요령」에 따라 인계·인수 사유 발생 시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입회자와 함께 2일 이내에 인계·인수가 이루어져야 하나,</li> <li>- 최근 10년 이내에 적법한 절차에 따른 인계·인수 사례가 전무하므로</li> <li>○ 관련 요령을 개정하는 등 적절한 업무 인계·인수절차 활성화가 필요함</li> </ul>	총무전산실

처분요구	지 적 내 용	담당부서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개선 ·주의(경고)</b></p>	<p>□ <b>고정자산 관리 및 처분 부적절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관련 지침 등에 따라 고정자산관리대장을 적절히 관리·비치해야 하며, 고정자산 불용신청서와 실물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즉시 보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,</li> <li>- 전산시스템상 고정자산 대장과 관련 요령의 내용이 상이하 며, 재활용 처리된 자산이 임의로 보관되고 있는 등 관리 대장의 신뢰도가 확보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손망실 사례 를 즉시 보고하지 않았으므로</li> <li>○ 관련 요령을 개정하여 전산시스템과 일치시키고, 고정자 산관리대장을 현행화 하는 등 자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, 관련자에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람</li> </ul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지방이전 추진실</p>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권고</b></p>	<p>□ <b>기관 신용카드 관리 미흡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기관 신용카드의 주요 변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하고, 카 드 사용일 이후 10일 이내에 카드 대금을 청구하여야 하나,</li> <li>- 전산시스템에 입력된 카드 주요 변동내역과 실제 사용현 황이 상이하고, 장기간 지연된 대금 청구 건이 발생하는 등 입금청구 행위 감독을 소홀히 하였으므로,</li> <li>○ 카드사용 변동사항에 대한 전산시스템 점검 및 현행화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, 카드 지급신청 지연 사례가 발생하 지 않도록 개선하시기 바람</li> </ul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재정관리실</p>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통보</b></p>	<p>□ <b>결산 회계처리 부적정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카드사용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일자는 카드 승인일로 하 여야 하고, 퇴직급여적립예치금은 과다하게 적립하지 않도 록 관리하여야 하나,</li> <li>- 지급신청 이후 회계 처리하는 일자를 집행일로 결의하였으 며, 퇴직급여적립예치금을 총당금 소요액보다 과다하게 적립 하는 등 결산 회계처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으므로</li> <li>○ 향후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</li> </ul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재정관리실</p>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개선·통보</b></p>	<p>□ <b>회계관계직원의 책임제도 운영 미흡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단체는 원규에 회계관계직원에 대 한 정의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야 하나,</li> <li>- 보증보험에 가입시켜야 하는 회계관계직원 정의가 모호하 고, 대위권 제한 특별약관에 미가입하는 등 제도상 미흡한</li> </ul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재정관리실</p>

처분요구	지 적 내 용	담당부서
	부분이 있으므로, ○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특별약관을 설정하시기 바람	
<b>시정</b>	<input type="checkbox"/> <b>조달청 나라장터 물품대금 납부기한 미 준수</b> ○ 국제법 시행령 등에 따라 계약의 대가는 검사 완료 후 청구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나, - 조달청 납기일을 경과하여 연체료가 발생하였으므로 ○ 관련자에 대해 해당 연체료를 회수하시기 바람	<b>재정관리실</b>
<b>개선</b>	<input type="checkbox"/> <b>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원규정비 미흡</b> ○ 원규인 계약업무요령, 임용요령, 문서관리규정 및 성희롱 예방지침 등이 상위 근거법령의 개정사항을 적시에 반영하고 있지 않는 등 상위 근거법령과 불일치하는 사례가 있어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- 규정 관련 전면적 개정 및 현행화를하시기 바람	<b>인재경영실 총무전산실</b>
<b>개선</b>	<input type="checkbox"/> <b>예산편성·집행지침 및 실행예산서 작성 개선 필요</b> ○ 기관운영관공비, 특별관공비 등 폐기된 용어를 사용하고, 실행예산서 상 인건비에 대하여 세세목별로 구분하여 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, ○ 실행예산서 구분단위를 명확히 하고, 폐기된 용어를 변경하여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확보하시기 바람	<b>기획예산실</b>
<b>통보</b>	<input type="checkbox"/> <b>동호회 지원예산 편성 부적정</b> ○ 기재부 관련 지침 등에 따라 동호회 지원 비용은 비급여성 복리후생비로 구분되어야 하나, - 복리후생비를 구분·적용하지 않고 체력증진비 항목으로 동호회를 지원하였으므로, ○ 상위 지침 등에 부합한 예산편성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람	<b>기획예산실</b>
<b>주의·통보</b>	<input type="checkbox"/> <b>인지세 적시 납부 미 이행</b> ○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서 작성 시 납세의무가 발생하므로 인지세를 적시 납부해야 하나, - ‘18년도 2분기 인지세를 4분기에 납부하여 해당기간 미납 상태로 존치하였으므로 ○ 향후 미납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업무절차를 개선하고, 관련자에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람	<b>총무전산실</b>